



의 안 번 호	제152호
회 의 연 월 일	2022. 12. 19. (제505회 정기회의)

심의
·
의결
사항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(대통령령)

제 출 부 서	경 찰 청 (교통국)
제출연월일	2022. 12. 5.

교통기획계장, 교통기획과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도로교통법」상 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승차인원 규정을 정비하고,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 위반하는 차마에 대한 범칙금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으로 규정하고, 등화 조작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2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23년 1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1.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.

제28조제1호 중 “70퍼센트 미만”을 “7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40퍼센트 미만”을 “40퍼센트”로 한다.

제31조제1호 중 “자동차안전기준”을 “「자동차관리법」상 자동차안전기준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중 “암점(暗點) 또는”을 “암점(暗點)과”로 한다.

별표 5 제7호나목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중 “확보할 것”을 “확보할 것. 다만, 제1종 대형면허 또는 구난차면허 기능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, 해당 기능교육장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다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10호의2 중 “밋”을 “또는”으로 한다.

별표 8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자전거행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	제15조의2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7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6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4만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

		4)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: 3만원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8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1. 등화 점등·조작 불이행(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)	제37조제1항제1호·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	1) 승합자동차등: 2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1만원 4)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: 1만원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표 8 비고 4. 중 “경운기”를 “도로에서 운전되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에 따른 농업기계”로 한다.

별표 10 비고 4. 중 “경운기”를 “도로에서 운전되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에 따른 농업기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, 별표 8,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운행상의 안전기준)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<u>자동차(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0퍼센트 이내일 것. 다만,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.</u> 2. <u>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</u>	제22조(운행상의 안전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</u>
제28조(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의 기준) 법 제49조제1항 제3호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앞면 창유리: <u>70퍼센트 미만</u> 2.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: <u>40퍼센트 미만</u>	<삭 제> 제28조(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의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앞면 창유리: <u>70퍼센트</u> 2.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: <u>40퍼센트</u>

제31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) 법 제52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
1.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

제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)

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,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(이하 “적성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,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(교정시력을 포함한다)을 갖출 것

가. 제1종 운전면허: 두 눈을

제31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) -----

-----.

1.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

제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)

①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-----

동시에 뜨고 켜 시력이 0.8 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 이상일 것.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8 이상이고,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,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,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(暗點) 또는 반맹(半盲)이 없어야 한다.
나. (생략)

----- 암점(暗點)과
반맹(半盲)이 없어야 한다.
나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